

I |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

1 개념 및 필요성

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

-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돋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-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

2 제도 도입 추진경과

■ '94년부터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 운영

-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,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·세출 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(구 「지방재정법」 제118조의3)
-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, 공개방법,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

■ '06년부터 「지방재정 공시제도」 도입

- 재정공시 대상, 공시방법, 시기,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(현행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)
- 기존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의 한계를 극복하고,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

II | 2024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

■ 결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

- 총괄표에 각 공시 항목의 대푯값을 표기하고 항목별 부연 설명을 통해 예산·결산기준 주요 재정상황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
- 각 항목의 규모 및 비율, 항목별 변동 추이 및 유형 평균과의 비교 그 래프 등을 기존서식 대비 간략히 표시
- 그래프 서식 등 지자체 제공을 통해 자치단체 재정공시의 서식 일원화
- 사회보장적 수혜금(현금성복지비) 집행 현황 신설
※ 현금성복지비 대상 통계목 : 301-03(전 주민 대상 자체사업)
- 일반예비비 및 재난·재해 목적 예비비 집행액, 집행비율 신규 공시

■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

- 사회보장적 수혜금(현금성복지비) 대상 통계목을 301-03(전 주민 대상 자체사업)으로 변경
- 일반예비비 및 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액, 편성비율 신규 공시

■ 그 밖의 재정정보 공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(세부사업별)

(참 고) 2024년도(2023회계연도)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

자치단체 재정공시(62개)		행정안전부 통합공시(38개)	
분류	세부항목	분류	세부항목
결산규모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입결산 • 세출결산 • 기금운영현황 • 지역통합재정통계 	결산규모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입결산 • 세출결산 • 기금현재액 • 지역통합재정통계
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정자립도[결산] • 재정자주도[결산] • 통합재정수지[결산] 	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정자립도[결산] • 재정자주도[결산] • 통합재정수지비율[결산]
부채/채무/ 채권 (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부채 현황 • 지자체 부채 현황 •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•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 • 우발부채 현황 • 지자체 채무 현황 •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• 일시차입금 현황 •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• 재정건전성관리 계획·이행 현황 • 보증채무 현황 • 채권 현황 	부채/채무/ 채권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대비채무비율 • 지자체부채비율 • 지방공기업부채비율 •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 • 민자사업재정부담액 • 보증채무 비율 • 채권현황
주요예산 집행결과 (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경비 집행현황 •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•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•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• 국외여비 집행 현황 •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•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 현황 •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• 사회보장적수혜금(현금성 복지비) • 연말지출 비율 • 예비비 집행현황 •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	주요예산 집행결과 (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무원기준인건비비율 • 업무추진비비율 • 지방의회경비비율 •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•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• 사회보장적 수혜금(현금성 복지비) • 연말지출비율 • 예비비 집행현황 • 기본경비비율
지방세/ 세외수입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세 징수 실적 • 지방세 지출 현황 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	지방세/ 세외수입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세 징수 실적 • 지방세 지출 현황 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
복지/ 민간지원 (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복지비 •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•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•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•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• 행사·축제경비 	복지/ 민간지원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복지비비율 • 지방보조금비율 • 행사·축제경비비율
재산및물품/ 지방공공기관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유재산 및 물품 • 출자·출연금 집행현황 • 출자·출연기관 현황 • 지방공기업 현황 	재산및물품/ 지방공공기관 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자·출연금비율 •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
재정성과/ 평가 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과보고서 • 복식부기 재무제표 • 기금성과분석결과 • 재정분석 결과 •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 현황 • 성인지 결산 현황 • 행사·축제 원가회계 정보 •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• 수의계약 현황 •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•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·처리 현황 •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• 신속집행 실적 • 감사결과 	재정성과/ 평가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인지 결산 현황 •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•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• 복식부기 재무현황 • 수의계약비율 •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• 신속집행 실적
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• 지방채 발행사업 • 민간투자사업 		
특수공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(5건 이상) 		

III |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

1 공시주체 :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

2 공시의 구분 :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

■ 공통공시 :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

- 예산공시 4개 분류 23개 세부항목, 결산공시 10개 분류 62개 세부항목

● ● 공통공시의 범위

→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(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)

-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, 성과보고서 포함)
- 재무제표
- 채권관리 현황
- 기금운용 현황
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지역통합재정통계
-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- 중기지방재정계획
- 제36조의2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-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- 제4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-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
-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-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-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(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 등)

→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(시행령 제68조)

-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-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-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- 특수공시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
 -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: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

- 정기공시 :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
 - ※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1항
- 수시공시 :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
- 작성방법 : 공시편람을 준수하되,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

4 공시방법

-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, 편의성, 시청률,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
-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, 지역방송, 시·군정지 (반상회보) 등
 -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
 -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·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
 -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, 보건소 등에 비치
 -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책자 활용 등
-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
 - ※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,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
 - ※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